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046
------	------

2022. 2. 1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월 21일, 박순규 의원(찬성의원 27명)

나. 회부일자 : 2022년 1월 2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2.2.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순규 의원)

1. 제안이유

- 용역이라는 단어가 단순 노동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쓰이면서 업계에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 을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변경하면서 서울특별시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 을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변경함.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전문적·복합적인 건설기술 서비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건설기술용역”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일괄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관계법령 개정사항

- 그동안 “건설기술용역”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업무로 통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단순한 노무 제공의 “용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향하는 건설기술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특히 건설기술이 설계·감리·측량·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 서비스 기술을 제공하는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용역”이란 표현이 이를 포함하는 의미를 전달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2021.3.16.)해 “건설기술 용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¹⁾과 같이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여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 하였음.

1) “엔지니어링활동”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는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 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및 사업관리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건설기술용역 용어 개정 현황>

개정대상	개정내용
건설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용역업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용역계약	건설엔지니어링계약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용역비	건설엔지니어링사업비

다.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이번 일괄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설 기술용역” 용어가 사용된 조례 3개를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변경 하였음.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개정 대상>

조문	조례명	정비조문	현 행	정비내용
제2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7호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3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2제3항제3호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2제5항제2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제4조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조제9호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이를 통해 그동안 단순 노동·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여겨왔던 “용역”에서 탈피해 복잡·다양한 건설 서비스 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설기술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박순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46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 박순규 의원(1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이광호,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최웅식,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의원(27명)

1. 제안이유

- 그동안 “용역”이라는 단어가 단순 노동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여겨지면서 업계에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건설기술이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등 매우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발전하였음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여 2021년 3월 16일 공포함.
- 상위 법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조례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건설기술용역”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